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87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31.

발 의 자 : 조인철 · 허성무 · 안도걸
한정애 · 박민규 · 전진숙
이건태 · 김우영 · 주철현
서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을 지원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.

그런데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하거나 거주하는 청년 등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유인하는 사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·중장년 등의 이주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 주거·고용·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).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착”을 “이주 및 정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정착”을 “이주 및 정착”으로 한다.

5.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 주거·고용·교육을 지원하는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청년·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·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<u>정착</u>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	제17조(청년·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<u>이</u> <u>주 및 정착</u>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<u>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</u> <u>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</u> <u>주거·고용·교육을 지원하는</u> <u>사업</u>
5.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·중장년 등의 <u>정착</u>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	6. ----- ----- <u>이주 및 정착</u> ----- 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